

① 개정개요

개정 전	개정 후
<p>□ 생애 최초 주택 감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상시거주)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,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·증여·다른 용도(임대 포함)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 ○ (추가 주택 취득 제한)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(상속 주택 제외) 추징 ○ (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) 2억원(수도권 3억원) 이하이고 임차인으로서 1년 이상 상시 거주한 주택을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하여 생애최초 주택 감면을 받은 경우(추징된 경우 제외) 	<p>□ 상시거주 추징요건 완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한 날[*]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·증여·다른 용도(임대 포함)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추징 *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해당 임대차기간의 만료일(잔여 임대차기간 1년 이내 限) <p>〈삭제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좌동 : 일몰 종료